#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52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모경종·박정현·김한규

이광희 · 김영환 · 한병도

김성환 · 진선미 · 진성준

김 윤 • 박주민 • 곽상언

김준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 · 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 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3항).

#### 법률 제 호

##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겸직임용"을 "겸직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임용된 교수요원의 명단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겸직 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 2. 겸직기간
- 3. 담당교과목
- 4. 겸임수당 지급 현황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교수요원의	<u> 겸직임용</u> ) ①	제11조(교수요원의 <u>겸직임용 등</u> )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임용된 교수
		요원의 명단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겸직 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u>및 직위</u>
		<u>2. 겸직기간</u>
		<u>3. 담당교과목</u>
		4. 겸임수당 지급 현황